

##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. 3. 7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2. 3. 7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9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2. 3. 18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업지원과장 이경섭)

가. 제안이유

-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중소기업 경영인과 근로자를 발굴 포상하여 자긍심을 부여하고 근로 및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시상의 명칭을 부천중소기업대상으로 하고 시상의 종류와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)
- 시상의 전문성 제고와 민간 경제기관(단체)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 및 제11조)
-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공적심사 기준을 정함(안 제6조 및 제8조)
- 시상시기 및 시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11조 업무대행은 시가 주관이 되어야 할 것임</li> <li>○ 시상은 기업체, 근로자 분리하여 분야별 시상합니까?</li> <li>○ 제4조 수상후보 자격을 보면 근로자 자격과 기업체 자격 기준이 다른데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행사만 대행하는 것이지 법적인 효과 등 시가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.</li> <li>○ 네, 그렇습니다.</li> <li>○ 기업체는 3년이나 개인은 5년으로, 장인정신을 살리기 위해 5년 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해야 해당되도록 차별화를 두었습니다.</li> </ul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수정안요지

○ 불 임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565호
의결년월일	2002. 3. 20 (제94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3. 19

제 출 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“시장”을 배제하고 “동장”을 추가하며 “지역상공회의소 회장”을 “부천시 공회의소 회장”으로 “지역노동사무소장”을 “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”으로 함
-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“10인”에서 “9인 이내”로 하며
- 심사위원회의 임기 중,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삽입하고
-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

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골자

- 후보자 추천서 “시장”을 배제시키고 “동장”을 추가하며 “지역상공회의소 회장”을 “부천상공회의소 회장”으로 “지역노동사무소장”은 “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”으로 수정(안 제5조제1항)
- 공적심사위원수를 9인 이내로 함(안 제6조제2항)
-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함(안 제6조제3항)
-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

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시장, 구청장,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장, 지역상공회의소 회장, 지역노동사무소장”을 “구청장, 동장,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장, 부천상공회의소 회장,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10인”을 “9인”으로 하고 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. “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 기간으로 한다.”

제13조 중 “수당”을 “일비”로 하고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후보자의 추천) ①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<u>시장, 구청장,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장, 지역상공회의소 회장, 지역노동사무소장, 시단위 노동단체 대표, 시단위 소비자 대표, 지역신용보증기관장, 기업의 대표(이하 “추천권자”라 한다)가 추천한다.</u>	제5조(후보자의 추천) ①..... <u>구청장, 동장,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장, 부천상공회의소 회장,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</u> .....
제6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(생략)	제6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(현행과 같음)
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<u>10인</u> 이내로 구성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 다만,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업무대행기관(단체)의 부기관장이 된다.	②..... <u>9인</u> .....
③위원은 시의회 의원, 공무원, 학계 및 중소기업관련 전문가, 기업인 중에서 학식과 덕망을	③.....

<p>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. (단서선설)</p>	<p>..... ..... .....<u>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</u> .....<u>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
<p>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는 <u>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</u> <u>례가</u>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일비 등) ..... .....<u>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</u>..... .....<u>일비</u>..... .....</p>

[수정안 포함]

###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  
하여 부천중소기업대상을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상의 종류 및 인원) ①시상의 종류는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 
시상할 수 있다.

1. 단체(기업체) : 창업분야, 생산성향상분야, 기술혁신분야, 해외시장개척분야, 경영난극복분야. 기타  
필요한 분야
  2. 개인(근로자) : 생산성향상분야, 기술혁신분야, 해외시장개척분야, 경영난극복분야, 기타 필요한 분야
- ②시상자 수는 단체 5개 업체 이내, 개인 5인 이내로 한다.

제3조(시상권자) 부천중소기업대상은 시장이 시상한다. 다만, 시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경제  
기관(단체)의 장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 기관(단체)의 장과 공동으로 시상할 수  
있다.

제4조(수상후보자의 자격) ①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업체 : 관내에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(다만, 창업분야는 1년 이상 가동 중인 업  
체)
  2. 근로자 :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상시근로자
- ②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후보자의 추천) ①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, 동장,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장, 부천상공회의소 회  
장,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, 시단위 노동단체 대표, 시단위 소비자단체 대표, 지역신용보증기관장, 기업  
의 대표(이하 "추천권자"라 한다)가 추천한다.

- ②수상후보자는 제2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 
현저하여야 한다.
- ③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천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 다만,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업무대행 기관(단체)의 부기관장이 된다.

③위원은 시의회 의원, 공무원, 학계 및 중소기업 관련전문가·기업인 중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중소기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.

제7조(회의) ①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수상자의 심사선정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.

제8조(공적심사) ①공적심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추천서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시결과를 근거로 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자격과 공적내용을 심의한다.

②공적심사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및 심사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시상시기) 시장은 매년 상공의 날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시상방법 및 부상) ①수상기업체와 개인에게는 각각 상패 및 시상금을 수여한다.

②수상자의 시상금은 기업체 200만원, 개인 100만원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업무대행) 시장은 시장의 전문성 제고와 민간경제기관(단체)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천중소기업대상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역 민간경제기관(단체)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특전) 수상기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시책에 대한 우선 수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